

산업체실험 · 실습시설이용에관한규정

제정 2001. 1. 16

개정 2012. 7. 1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 정신에 입각하여 산업체에서 본 대학의 실험실습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제한) 본 대학의 실험실습 시설의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한다.

- ①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있을 때
- ② 교수의 연구에 지장이 있을 때
- ③ 시설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④ 학생의 실험실습에 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부품 또는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 ⑤ 산학협력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제3조(이용절차) 산업체에서 본 대학의 실험실습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 "별첨"의 이용신청서를 본 대학의 교육지원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① 이용목적
- ② 이용할 실험실습 시설의 범위와 내용
- ③ 이용 예정시간
- ④ 예상되는 효과
- ⑤ 이용에 따른 조건 제시

제4조(심의 및 승인절차) ① 교육지원처장은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실험실습 시설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한 다음 해당 스쿨원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이첩하여 시설이용의 적부에 관하여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해당 스쿨원장은 3일 이내에 당해 실험실습 담당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시설이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 해당 스쿨원장은 시설이용에 관한 승인여부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처장은 스쿨원장의 승인여부를 참조하여 이용의 적부에 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교육지원처장은 총장의 실험실습 시설의 이용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산업체의 장과 해당 스쿨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결과 평가) 해당 스쿨원장은 실험실습 시설의 이용이 종료되면 이용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

서를 산학·예산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손해배상) 시설이용 중 파손, 도난,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한 시설의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이용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실험실습 시설이용에 따른 전기료, 재료비 등의 수수료는 실비로 책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